

비거주자 과세, 해외금융계좌, 국외 증여, 국제거래 신고 점검

회계법인 리파인드

국제조세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신고 의무는 거주 여부, 재산 소재지, 금액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검토 결론

해외금융계좌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합니다(국조법 §53①, 시행령 §92③).

한국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냅니다(국조법 §35②). 증여재산공제는 §35⑥ 준용 결과를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 4개

1
거주 여부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상증법 §2 8호)

2
계좌 잔액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5억 원 초과

3
재산 소재지
국외 재산이면 납세의무자가 바뀝니다

4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거래 있으면 6개월, 매출 1천억·거래 500억 초과면 12개월

이런 분께

- 해외에 계좌나 부동산이 있고 신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분
-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주려는 분
- 해외 상속인이 있거나 해외에서 상속이 발생한 분
- 해외 본사나 자회사와 거래하는 오너기업 대표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현황 진단	거주자 판정 자료(가족 거주지, 체류일수, 국내 자산)와 해외 계좌 잔액, 해외 부동산, 해외 지급 내역을 받아 신고 대상과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2 쟁점 확정	미신고 건이 있으면 기한 후 신고의 감경 구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국외 증여나 비거주자 상속이 있으면 납세의무자와 공제 적용 범위를 확정합니다.
3 신고 실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를 기한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국외 지급이 있으면 실질귀속자에게서 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4 사후 관리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해외 과세가 한국 세법과 겹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를 신청합니다.



02

거주 여부가 과세를 정합니다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주면 증여자가 세금을 냅니다

같은 증여여도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한국 거주 부모가 국외 재산을 비거주 자녀에게 주면 국내 증여와 반대로 부모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일은 재산별로 상증령 §24가 정합니다(등기·등록 재산은 등기·등록접수일). 신고기한 3개월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도해 1. 국외 증여의 납세의무자 흐름

한국 거주 부모
증여자, 납부의무자

→

국외 재산 증여
증여 당시 소재국 시가로 평가

→

비거주 자녀
수증자 비거주자, 한국 증여세 신고 대상

→

한국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국외 재산 + 비거주 수증자 = 증여자 납부

국조법 §35②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그 재산에 외국 법령상 증여세가 부과(면제 포함)되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35③). 자녀는 4촌 이내 혈족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35⑤).

근거: 근거: 국조법 §35①~⑥, 상증법 §2 8호·§4의2①·§32·§53, 상증령 §24,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1호

도해 2. 거주 여부별 상속·증여 과세 범위

수증자와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가 과세 범위와 공제를 바꿉니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3 1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3 2호)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21①)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에만 적용(§21①). 기초공제 2억 원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18)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4의2①1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4의2①2호)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53)	§53 본문은 거주자 수증자를 전제로 합니다. 국외 증여는 국조법 §35⑥이 준용합니다. 적용 여부와 금액은 §53 각 호의 관계별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67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67④)	6개월(§67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67④)

국내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수증자가 납부하고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증법 §4의2⑥3호).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열거된 증여 유형은 제외됩니다.



03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확인이 빠진 항목은 과태료, 가산세,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거주자 판정

상속세는 피상속인,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 대상입니다(상증법 §3, §4의2①). 주소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상속세에서는 거주자로 봅니다. 국외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는 거주자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118의2).

근거: 소득세법 §118의2, 소득세법 시행령 §2①③④·§2의2②1호, 상증법 §3·§4의2①, 상증령 §2②

2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해외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를 신고합니다(시행령 §92①).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합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명의이면 관련자 각자가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미신고 과태료 기준은 미신고 금액의 10%(상한 10억 원)이고 50% 범위에서 가감합니다. 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금액의 10%도 부과기준입니다(법 상한 20%).

근거: 국조법 §53①②·§90①②, 시행령 §92①②③⑥·§147①②

3 국외 재산 증여

한국 거주 부모가 국외 재산을 비거주 자녀에게 주면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재산은 소재국의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외국에서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소재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돼도 §35③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적용은 §35⑥ 준용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근거: 국조법 §35②③④⑤⑥, 상증법 §53·§68①

4 비거주자 상속과 외국세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상속재산 중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증여세가 10년(무신고·부정행위·거짓 또는 누락 신고는 15년), 그 외 국세는 역외거래이면 7년(무신고 10년, 부정행위 15년)입니다.

근거: 상증법 §3·§21①·§29·§67④, 국세기본법 §26의2①②④

5 국외 지급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 유형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 20%(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는 14%), 배당 20%, 사용료 20%, 사업소득 2%(조약상 사업소득 제외), 인적용역 20%(국외 제공 일부 용역으로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 소득이면 3%)입니다. 납부기한은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제한세율은 실질귀속자의 신청서와 증빙을 받아야 적용합니다. 못 받으면 법정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98의6③).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징수합니다(§98④).

근거: 법인세법 §98①④·§98의6①③④, 국세기본법 §47의5①

6 국제거래 자료 제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냅니다(국조법 §16②, 면제는 시행령 요건). 내국법인 등으로서 매출 1천억 원 초과이고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500억 원 초과이면 12개월 이내에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냅니다(§16①, 시행령 §34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행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2억 원 이하가 추가됩니다(§87). 보고서 제출의무자나 정상가격 자료를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유사 사업자 자료 등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16⑦).

근거: 국조법 §16①②⑦·§87①②, 시행령 §34①



04

판정 순서와 일정

사건이 생긴 날 기준으로 짧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신고·제출 기한 순서

지급 후 다음 달 10일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 기한은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법인세법 §98①)

증여 후 3개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상증법 §68①, 국조법 §35⑥)

6~9개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제거래명세서 등(국조법 §16②). 상속은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상증법 §67①④)

사업연도 후 12개월
같은 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국조법 §16①)

다음 해 2월 말·6월
제한세율 서류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법인세법 §98의6④),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해 6월 1~30일(국조법 §53①)

도해 3. 판정 순서

순서	판정과 결과
1 거주자인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의2②1호).
2 재산이 국외에 있는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납부합니다. 국내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수증자가 납부하고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상증법 §4의2⑥3호).
3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달이 있는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10%(상한 10억 원)가 과태료 기준입니다.
4 기한이 지났는가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이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의 30%에서 90%를 줄입니다(시행령 §147④).
5 국외 지급이나 국외 거래가 있는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 6개월·12개월 제출 의무를 확인합니다.

보수

보수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대상 계좌 수, 국가 수, 거래 건수와 자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한국 세법상 신고와 공제 검토를 범위로 서면 견적을 드립니다(외국 세법상 신고와 현지 절차는 범위 밖입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법인이나 가족 명의 해외 계좌도 제가 신고하나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두 사람이 모두 신고 대상 관련자입니다(국조법 §53②). 공동명의이면 각 공동명의자가 대상이고, 관련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92⑥). 내국법인 명의 계좌는 그 법인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외국법인 명의 계좌라도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거주 여부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기준입니다.

국조법 §53, 시행령 §92②⑥, 서면-2020-국제세원-2516(회신 당시 조문 기준)

Q2. 신고기한을 넘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달라지나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이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55②).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 2년 이내 30%를 과태료에서 줄입니다. 과소 신고의 수정신고는 6개월·1년·2년·4년 구간에서 90·70·50·30%입니다. 과세당국의 부과 예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3~20% 벌금도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16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국조법 §55, 시행령 §147④, 조세범 처벌법 §16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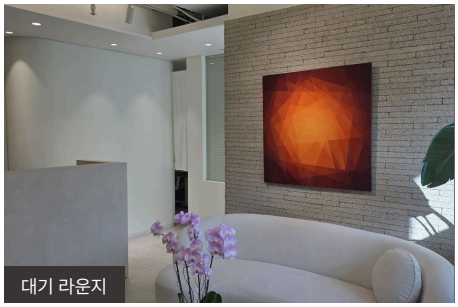
Q3. 해외 부동산을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 증여세가 나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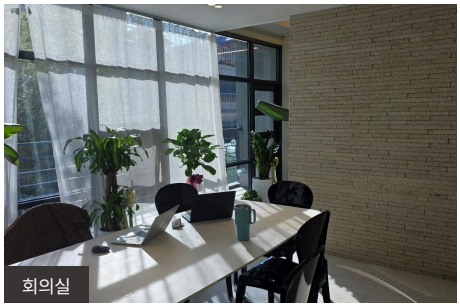
부모가 한국 거주자이고 자녀가 비거주자이면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납부합니다(국조법 §35②). 부동산 가액은 소재국의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35④). 소재국에서 증여세를 냈으면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35⑤). 자녀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소재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자녀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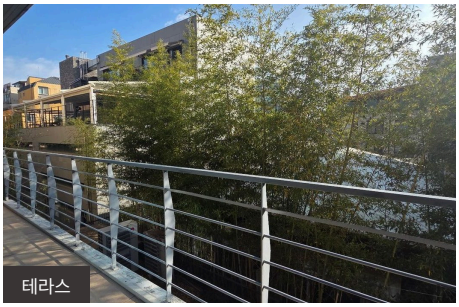
국조법 §35,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1호

담당 회계사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세무법인 엑스퍼트 소속)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대기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